

### ■ 업무내용

종합적인 계획·관리·조정에 따라 수목원·공원·녹지·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·개량하는 공사

### ■ 등록기준

#### 1. 자본금

| 법인     | 개인      |
|--------|---------|
| 5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

#### 2. 기술능력

| 기술자격   |
|--|
| 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<br>2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<br>3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|
|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   |

#### 3. 공제조합

2024.08.08 기준

|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좌당        | 자본금 | C등급 이상                 | D등급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조경공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51,800원 | 5억원 | 117좌<br>(181,560,600원) | 131좌<br>(203,285,800원) |
| ※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4. 시설·장비

| 사무실   |
|---|
| 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 |
| 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           |

##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